

三 政府와 大學教育政策의 方向과 과제

李 敦 熙

(서울大 教育學科)

1. 基本前提 : 大衆化의 不可逆的 狀況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은 그 양적인 규모로 볼 때 이미 精銳體制를 탈피하고 大衆體制로 전환하였다. 대학의 취학률은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학에 취학할 연령층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학생이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40%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고, 인구 1만 명당 대학생의 수는 400명을 초과하고 있다. 대학생의 수는 전체 학생 수의 13%를 상회하고 있으며, 공교육비의 28.6%가 대학교육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이렇듯 오늘의 대학교육의 기회는 크게 개방되어 옛날과 같이 소수의 정예집단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과거의 대학생이 누리던 희소가치와 사회적 위세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대학교육은 公教育體制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만 아니라 국가의 제도적 구조의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高級人力의 생산적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들이 과연 전통적 이념으로 여겨온 學問的·専門的 秀越性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써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

하기 위한 방향의 선택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율적 권위와 사회일반이 기대하는 만큼의 역량을 소유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사실상 궁정적 대답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물론 個別大學에 따라서는 그 수월성과 자율성과 역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간에는 절적 격차가 적지 않고, 우수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하는 풍토와 전통과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만한 대학은 보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편으로 사회적 人力量을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高學歷主義를 지향하는 대중적 욕구체제의 압력에 부응하여 대학교육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문호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대학정책을 펴 왔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교육의 절적 저하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도적·행정적 통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자생적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대학교육의 質的 決定要因은 양적 팽창 그 자체만은 아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자원의 수준, 산업체를 비롯하여 대학출신자들을 고용하는 각 부문의 인력수용구조, 대학 자체의 전통과 경험, 그

리고 교육의 제반 여건들이 총체적으로 대학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의 절을 결정한다. 그러나 급격한 양적 팽창은 다른 조건들을 유리하게 조성시키는 일을 하는 테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의 대학교육이 특히 1980년대의 초기에 급격히 팽창하고 있을 당시에 정체제에서 대중체제로의 전환을 두고 사회적 혹은 교육적 爭點으로 삼아 본 적도 없이 대학정책은 정부의 주도하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되어 버렸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양적 팽창이 어떤 大學教育觀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체제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대학교육의 大衆化는 이미 不可逆의인 것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대중체제적 대학교육 이대로를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역할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하게 하느냐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서 나는 적어도 네 가지의 기본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質的 管理體制를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大學의 自律性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셋째는 大學間의 隔差를 줄이는 것이며, 넷째는 사회의 고용체제를 學歷主義에서 資格主義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 네 가지 이외에도 대학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이 없지 않겠으나, 내가 보기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혈재의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겨냥해야 하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2. 秀越性의 實現과 質的 管理體制

우리는 혼히 대학을 그 전통적 이념과 기능에 비추어 ‘學問의 殿堂’ 혹은 ‘文明의 心臟’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전통적 인식은 현대에 와서 다소 변화되어 가고 있으나, 대학은 적어도 고도의 학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연구하고 확산시키는 기능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대학이 국가적 발전의 힘을 생산하는 근원지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오늘과 같이 국제적 관계가 긴밀해지고 또한 복잡해진 상황

에 능률적으로 적응하고,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서 발전을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힘의 중추적 역할을 대학이 맡아야 한다는 기대는 어느 시기보다도 높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그 수월성을 발휘하여 안으로 국민 전체의 教養的·文化的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도적 기능을 하여야 하며, 普通教育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성숙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의 우리 대학들은 교육적·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도덕적 수준에 있어서나 건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 대학들은 대학구성원 스스로에게도 마치 낡은 기계처럼, 병색이 짙은 환자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마치 염려스런 철부지처럼, 때로는 방종한 탕자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대학들이 이러한 나약하고 미성숙한 상태에 있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현대적 대학을 운영해 온 경험이 일천하였다는 것, 그리고 예상하기조차 어려웠던 급격한 변화의 오인이 국제적·국내적으로 발생하여 대학에 파급되었다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대학교육을 위한 제도 운영과 정체 개발이 미숙하였고, 사회의 대학에 대한 인식이 고루하거나 왜곡된 데도 문제가 없지 않으며, 대학구성원 스스로가 대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려는 ‘使命感의 緊張’이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秀越性의 理念이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수월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전통적 대학의 ‘秀越性’은 理知的 秀越性을 의미하였고, 이론적 사고의 능력만을 찬양하는 관습 속에서만 쓰이던 말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중화된 대학은 그 수월성의 개념을 다원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학문적 수월성만이 아니라 직업적·예술적·도덕적·지도적·교양적·기술적 수월성 등이 함께 그 의미를 지닌다. 수월성의 다양화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수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학구성원의 本地적 인식으로서 혹은 문화적 내용으로서 형성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강요되거나 특정의 집단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주장되거나 조작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리적 마음에

의해서 ‘共感’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의 질적 관리체제는 일차적으로 내적 체제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 정부나 어떤 기구의 주도하에서 외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나 외부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학간의 기능적 분담, 정보의 교환, 협력적 체제의 조성, 문제의 공동해결, 자원의 지원 등 대학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조정과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적어도合理性에 관한 한, 대학은 사실상 사회의 어느 조직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없는 조직이다. 그러나 대학이 지난 합리성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거기에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潛在的合理性은 때때로 어떤 주도적 혹은 조정적 힘의 도움을 받아야 實際的合理性으로 생동할 수 있게 된다. 잠재성은 언제나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주어져야 실제적 힘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대학의 질적 수준을 거론하면 대개 연상되는 것은 일차적으로學生의 質이다. 옛날의 소수 정예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지금의 대중체제는 평균적인 학생의 질, 적어도 잠재력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이러한 의미의 질적 저하를 감수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충원 구조가 요청하는 인력의 양성을 기한다는 정책의 전환이다. 그러므로 양적 팽창이 가져오는 전체적 학생의 잠재적 능력이 질적으로 저하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우려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급격한 양적 변화에 따른 졸속의 충원으로 발생하는 ① 教授集團의 질적 저하, ② 各級學位의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위와 공신력의 실추, ③ 施設과 舉件의 조성이 부실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육과 연구의 질적 저하, ④ 대형화된 교육규모를 운영하기 위하여 작용하는 官僚體制의 僵一性의 역기능, ⑤ 自律的管理能力이 미흡한 데서 오는 낭비적 운영 등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대학 구석구석에는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고 그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로 있다.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는 대중화와 학생수의 양적 팽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조건이 불비한 데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임 교수의 학보율 증대, 교수임용제도의 형식화, 교수-학생 비율의 적정화, 학생선발의 중앙관리, 교육과정의 합리화, 시설기준의 법정화 등 질적 관리의 기본적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관료행정적 노력을 바쳐 왔다. 그러나 대개는 형식적 운영에 불과하였고 그 내용을 기하려는 개별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만족스럽게 유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방만한 대학 운영을 그대로 방치하는 상태에 있다.

내가 보기로 그러한 부실현상의 일차적 원인은 대학교육의 질적 관리체제가 대학조직의 밖에 있는 힘의 작용으로 가능하다고 여기는 타성적 사고에 기인한다. 물론 정부는 質的管理體制의 指標를 개발한다든가, 그것에 의한 機關評價를 실시한다든가, 필요한 행정적 권고조치를 한다든가로 개선의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적 통제는 결과적으로 내적 무관심과 과동적 대응의 고질화를 초래하고 형식적 대응의 타성만을 증대시키게 된다. 정부는 오히려 개별대학의 자율적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하고, 대학의 잠재적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개발을 이루어야 한다.

3. 自律性：大學의 生命力

大學이라는 제도(university)는 본래 그 근원부터가 다양한 조직체의 ‘組合’이다. 대학은 다양한 이념이 공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욕구가 공히 추구되며 다양한 학풍이 교차하며 다양한 이론이 거래되는 곳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주장할’ 가치이고 ‘허용할’ 가치이며 또한 ‘존중할’ 가치이다. 대학사회가 존중하는 자유란 어떤 의미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자유이다. ‘學問의 自由’라는 말은 대학의 이념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며 대학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경계하는 분위기에서 혼히 언급된다. 엄격히 생각하면,

그것은 真理를 찾고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논증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강제나 방해나 간섭을 배격하고, 독선적 편견이나 선동적 풍토를 경계하며, 진리를 향한 태도와 사고에 충실을 기하려는 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은 학설과 신념과 주장과 욕구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가 없다. 대학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대학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의 ‘多樣性’은 대학으로 하여금 ‘학문의 자유’라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며,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의 자율성은 그러한 다양성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없는 풍토 속에서는 결코 기대될 수가 없다. 대학은 그 이념과 가치를 능률적으로 실현하면서 균형있고 건강한 성장을 자율적으로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이 자체의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일반에 대하여 성장의 근원적인 힘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대학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다. 정부나 다른 외부적 힘의 도움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成長의 방향과 성장의 의지와 성장을 주도하는 힘은 대학의 구성집단 전체의 자율적인 결속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유지되어야 한다.

비록 잠재적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지니고 있는 合理性은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潛在力を 의미하며, 이 잠재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대학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자율적 역량에 대한 신뢰를 둘 수 있는 조직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학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통제력이 이완되면 위험스럽게도 보인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혼란은 대학이 자율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혼란과 위협은 대학에 대한 경직된 통제력이 가져오는 위협보다는 오히려 친선 멀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自律性’은 혼히 외부적 간섭이나 통제가 없는 상태만의 의미를 지니는 ‘防禦的’ 용어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의 자율성을 경계하는 편에서도 볼 수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수호하는 편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은 내적 통제의 원리이다. 오히려 자율성의 개념은 대학이란 知性의 組織體로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의 교환, 결정의 과정, 목표의 추구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典型으로서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개념이다. 대학은 다른 어느 조직체보다도 조직의 원리나 운영 규칙이나 활동의 질서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대학은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서나, 조직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나, 사회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나, 민주주의의 원리와 실천적 규범의 실현장으로서 그리고 그 표본으로서 사회에 비쳐져야 한다. 모든 형식적 조직의 운영에서만이 아니라 비형식적 혹은 임의적 조직의 활동에서도 대학의 구성원은 이러한 풍토, 즉 ‘民主的文化’를 이루고 지키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 관련된 法令은 기기서 이루어질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체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교육은 그 자체의 체제와 조직, 활동의 내용, 심지어는 목표수행의 절차까지도 법령적 차원에서 통제받는 상황에 있다. 個別大學은 학생선발의 체제와 절차, 학생의 정원과 학과의 구성, 교원의 임용절차와 보수체계, 교육활동의 내용, 연구성과의 평가기준, 학교경영의 원칙 등에 관련된 법령적·정책적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합리적 역량과 창의적 가능성은 실현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제한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결도 그러한 규칙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거의 언제나 외부적 힘의 작용을 기대하게 된다.

우리의 대학들은 政府의 統制에 매우 익숙해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에 타성이 형성되어 있다. 정부는 대학들을 통제권 밖에 두면 불안하고, 대학은 정부의 통제적 기능이 이완되면 방황한다. 이러한 관계는 권위주의적 통치체계가 지배하고 학원소요가 극심하면 시기에 정부와 대학 사이에 형성된 고질적 풍토이다. 최근

에 와서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자율적 결정권을 이양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개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사항들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여전히 정부통제의 체계에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성에서 출현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대학별 개성적 다양성은 아직 거의 관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사실상 전체로서 ‘하나의 커다란 대학’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물론 대학은 거의 언제나 정부의 통제나 보호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통제나 보호나 지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자율성의 신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과 지원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대학의自律的潛在力에 대한 불신은 대학의 불신을 의미한다. 그러한 불신으로 인하여 외적 통제로써 대학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대학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과 같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성을 희생시켜 가면서 대학교육의 성과와 그 역할의 증대를 기대하는 것은 자체 모순적 사고이다.

4. 大學間의 隔差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학간의 격차, 즉 소위 ‘一流大學’, ‘二流大學’ 혹은 ‘三流大學’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게 하는 대학의 격차는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극히 우려되는 요소의 하나이다. 물론 대학은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월성이 발휘되는 정도에 따라서 대학간의 격차가 있고 그 격차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대학간의 격차는 제도나 정책의 개발을 통한 인위적 조정으로 해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대학간에 있는 다소간의 격차는 普意의競爭的雰囲氣를 형성하고 또한 그 자체가 大學의個性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간에는 교육과 연구의 學風의 多樣性이 거의 없다. 대학의 격차는 입학생의 질적 수준, 개별대학의 사회적 위세, 그리고 교수진과 시설의 양적·질적 수준 등이 전

면적으로 결정하며 상대적으로 판별될 수 있을 수준의 차도는 회일적이다.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취향과 적성에 따른 선택이 거의 무의미하며, 졸업생을 채용하는 고용자도 교육과 훈련의 배경에 따른 능력의 종류를 변별할 수 없고 회일적 기준에 의해서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입학성적의 점수분포가 가지 적이어서 그것으로 인한 大學의 威勢가 사회적 통념으로 수용되고 대학간의 격차는 고착되어 있다. 그리고 불합리한 사회적 선입견이 조성되어 대학생활 중의 성장 정도에 관계없이 위세가 낮은 대학 출신은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대학간의 격차는 고착되어 대학사회가 선의의 경쟁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으며, 위세가 높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은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하급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한때 大學의 特性化를 계획하여 그 원칙에 따라서 지원정책을 시행한 바도 있다. 그것은 대학간의 격차를 줄이고 개성을 소유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정부주도에 의한 타율적 조치였기 때문이다. 대학의 운영원리가 규격화되어 있고 대학구성원의 자율적 결정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분야의 파격적 지원이나 특혜는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학생선발제도의 자율성, 교수진의 구성과 보수와 근무조건의 자율적 결정, 관련분야와의 협동적 관계, 교육과 연구의 제반 조건에 대한 운영의 자율성 등이 법령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간의 격차를 줄이는 일은 財政的支援의 균등화뿐만 아니라 개별대학이 지니고 있는 自生的力量을 자율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예전 대학생선발은 教育部가 정한 규칙 혹은 대학단위별로 정한 회일적 방식에만 의존해야 하고, 학과의 정원이나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수 등이 통제를 받으며, 대학의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외국 국적을 소유한 학자, 심지어는 한국계 학자까지도 국내 대학의

정규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수의 임용과 승진과 보수의 책정방식이 회일화되어 있고, 대학간의 학생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는 어떤 대학의 어떤 분야도 제도적으로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체의 성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대학간의 질적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특전과 같은 객관적 조건의 지원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개별대학이 지니고 있는 成長意志를 정부는 균형있게 파악하고 그 의지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여건의 조성과 정책적 지원의 합리화를 기하는 일이다.

5. 學歷主義에서 資格主義로의 轉換

우리나라는 현재 學歷主義의 社會이다. 각급 학교의 졸업장이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의 객관적 척도로 되어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과 훈련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대학의 졸업증서만 소지하면 고용에서나 승진에서나 보수에서나 우대되는 풍토가 지배하는 한에서는, 젊은이들이 개별적 능력의 專門性과 潛在性의 실질적 개발보다는 대학의 형식적 졸업증서를 소지하려는 방향으로 유도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풍토는 대학교육의 내용과 질적 관리가 고급인력을 요구하는 취업부문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물론 대학은 흔히 '產學連繫'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가 요구하는 人力需要의 構造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 대학은 그 자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특징적으로 學問과 教養을 닦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엘리티즘이 대학교육을 지배하던 당시의 인문주의적 특성 때문에 형성된 것이어서 오늘의 대학이 지닌 사회적 기능에 반드시 부응한다고 하기도 어려우며, 그 전통을 허물지 않는다면 더욱이 대학의 졸업증서가 취업상황에서의 능력평가를 위한 가장 중심되는 사항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이 산학연계의 사회적 요청에 충실히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대학은 그것에 맞게 교육과 훈련

의 과정을 이수시킨다면, 그것의 충실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길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과 취업에 일차적으로 學歷主義가 적용되면, 대학은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취업준비에만 경열을 끊게 되어 전통적인 학문적·전문적 수월성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질 가능성성이 있다. 거기에다 고용과 취업에서의 학력주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고 학급학교는 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체제 속에서 그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만약 달리 대학이 전통적 경향을 유지시키면, 교육과 훈련은 사회적 인력수요의 기준과 무관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은 그 자체의 전통적 수월성을 유지하는 데 일차적 관심을 가지게 되며, 취업세계는 필요한 능력수준을 보장받는 제도에 의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면적 목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고용체계가 학력주의에서 資格主義로 전환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學歷과 資格을 분리시키는 일이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 그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소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일차적으로 教育政策의 課題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이란 그것이 개발되고 시행되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정책과 합리적인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내가 보기로 이 제도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英國이다. 영국에서는 학교의 졸업장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시험에 의해서 학력과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예컨대 중등학교 일반학력증서(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고급수준 일반학력증서(GCE-A Level: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Advanced Level), 일반직업자격증서(DVQ: Diploma of Vocational Qualifications), 국가직업자격증서(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등 이러한 증서들에 기록된 능력의 수준이 취업과 진학의 일차적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